



의 안 번 호	제 27 호
회 의 연 월 일	2023. 4. 3. (제512회 회의)

심의
의결
사항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령)

제 출 부 서	경 찰 청 (기획조정관)
제출연월일	2023. 3. 30.

조직계장, 혁신기획조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1. 개정이유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사무 개편, 인력 변동 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 하부조직을 개편하고, 경찰청 및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소관 사무를 개편하며, 경찰공무원의 직급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청 자치경찰 사무 이관에 따른 조직개편(안 제4조, 제8조)

경찰청 기획조정관에서 수행하던 자치경찰 관련 업무를 생활안전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기획조정관 자치경찰담당관을 생활안전국 자치경찰과로 이관함.

나. 경찰청 중대산업재해 업무 신설(안 제5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경찰청에 관련 업무를 경무인사기획관 경무담당관의 사무로 신설함.

다. 경찰청 생활질서과 폐지, 치안상황관리담당관 신설(안 제5조의2, 제8조)

치안수요 변화에 따라, 경찰청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를 폐지하고, 치안상황관리관 소속으로 치안상황관리담당관을 신설함.

라. 행사경비 및 재난관리 사무 개편(안 제10조, 제34조, 제38조, 제53조, 제57조)

경찰청 경비국 경비과의 행사경비 사무를 국가중요행사 지원 및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로 세분화하고, 국가중요행사 지원은 경비과에서,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는 위기관리센터에서 각각 소관하도록 하는 한편,

재난관리 사무를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에서 경비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경찰청 및 그 밖의 시·도경찰청 역시 관련 사무를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경비과로 이관함.

마. 수사운영지원담당관 명칭변경(안 제13조)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수사운영지원담당관의 명칭을 수사기획담당관으로 변경함.

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사무 신설(안 제1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을 위한 센터 개설 예정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경찰청 수사국의 사무로 신설함.

사. 강원도경찰청 명칭변경(안 제50조,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

5, 별표6, 별표8, 별표11, 별표12)

강원도의 명칭을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함.

아. 경찰서 주소 변경(안 별표2)

부천소사, 의왕, 포항북부, 안동, 의성경찰서 소재 주소가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함.

자. 경찰청 및 소속기관 인력변동(안 별표13, 별표14, 별표15, 별표16)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경정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경감 1명),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경정 1명, 경사 2명, 경장 2명, 순경 2명) 및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경정 1명, 경위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경찰청에 소방청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소방령 4명)을 증원하면서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27명(경정 17명, 경감 112명, 경위 50명, 경사 46명, 경장 45명, 순경 56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지문감정 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행정·관리운영직군 정원 18명(7급 3명, 8급 9명, 9급 6명)을 전문경력관

(나군 3명, 다군 15명)으로 전환하고, 경찰청의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원 11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및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333명(경정 4명, 경감 22명, 경위 46명, 경사 65명, 경장 63명, 순경 96명, 6급 2명, 7급 6명, 8급 17명, 9급 12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민생치안 및 수사역량 제고를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4,234명(경위 80명, 경장 1,800명, 순경 2,35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감 80명, 경위 2,197명, 경사 1,957명)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행정안전부령 제 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혁신기획조정담당관·재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자치경찰담당관”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재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혁신기획조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자치경찰담당관”을 “혁신기획조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치안상황관리관) ① 치안상황관리관 밑에 치안상황관리담당관 1명을 두되, 총경으로 보한다.

② 치안상황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치안상황관리관을 보좌한다.

1. 치안 상황의 접수·상황판단, 전파 및 초동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112신고제도의 기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총괄

3. 지구대·파출소 운영체계의 기획, 관리
4. 지구대·파출소 정원, 인사, 복무, 예산, 성과 관리
5. 지구대·파출소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
6. 지구대·파출소 근무자에 대한 교육

제8조제3항 중 “범죄예방정책과·생활질서과·아동청소년과”를 “범죄예방정책과·자치경찰과·아동청소년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7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풍속 및 성매매(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단속
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도·단속
9. 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
10.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

제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질서과장”을 “자치경찰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치경찰제도 관련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2. 자치경찰제도 관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치안 현안 및 운영현황 총괄 관리
3. 자치경찰제도의 연구 및 개선
4. 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에 대한 사무 총괄

5.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도 조례 제정·개정에 관한 협의·조정
6. 자치경찰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자치경찰제도 관련 재정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자치경찰제도 관련 시·도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 간 기관협의체 운영 지원
10. 그 밖에 자치경찰제도 관련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중요행사 및 선거경비 지원 관련 업무

제10조제4항에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재난·위기 업무에 대한 지원 및 지도
12.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13.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지도
14. 비상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사운영지원담당관”을 각각 “수사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3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중경비·국가중요행사 및 선거경비 지원 관련 업무

제38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 업무
9. 비상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10. 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11.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원 관련 업무

제50조제3항 본문 중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북부·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를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북부·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로 한다.

제53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중경비·국가중요행사 및 선거경비 지원 관련 업무
12.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 업무
13. 비상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14.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원 관련 업무

별표 1 중 강원도경찰청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일원
------------	---------	------------

별표 2의 경기도남부 경찰청의 경기도 수원시의 부천소사 경찰서의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천시 부광로 214

별표 2의 경기도남부 경찰청의 경기도 수원시의 의왕 경찰서의 위치란 중 “시청로 96”을 “오봉로 10”으로 하고, 같은 표 시·도경찰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란 중 “강 원 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 경상북도 경찰청의 경상북도 안 동 시의 포항북부 경찰서의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포항시 북구 삼흥로 370

별표 2의 경상북도 경찰청의 경상북도 안 동 시의 안동 경찰서의 위치란 중 “제비원로103”을 “강남로 87”로 하고, 같은 란의 의성 경찰서의 위치란 중 “동서1길 31”을 “홍술로 71-5”로 한다.

별표 3의 시·도경찰청 중 “강 원 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4의 시·도경찰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5의 시·도경찰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6의 시·도경찰청 중 “강 원 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8의 시·도경찰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1의 시·도경찰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2의 시·도경찰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3 중 총계 “1,926”을 “1,93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13”을 “1,217”로 하며, 경 정 “161”을 “163”으로 하고, 경 감 “417”을 “415”로 하며, 경 위 “341”을 “340”으로 하고, 경 사 “176”을 “177”로 하며, 경 장 “29”를 “31”로 하고, 순 경 “12”를 “14”로 하며, 순 경 14 다음에 “소방공무원 계 4”를 신설하고, 소방공무원 계 4 다음에 “소방령 4”를 신설하며, 일반직 계 “713”을 “709”로 한다.

별표 13 중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3”을 “12”로 하고, 행정주사보 “141”을 “137”로 하며, 행정서기 “218”을 “207”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92”를 “8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다군(홍보업무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지문감정 담당) 3”을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지문감정 담당) 3 다음에 “전문경력관 다군(지문감정 담당) 15”를 신설한다.

별표 14 중 총계 “2,040”을 “2,044”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13”을 “1,217”로 하며, 경정 “161”을 “163”으로 하고, 경감 “417”을 “415”로 하며, 경위 “341”을 “340”으로 하고, 경사 “176”을 “177”로 하며, 경장 “29”를 “31”로 하고, 순경 “12”를 “14”로 하며, 순경 14 다음에 “소방공무원 계 4”를 신설하고, 소방공무원 계 4 다음에 “소방령 4”를 신설하며, 일반직 계 “827”을 “823”으로 한다.

별표 14 중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3”을 “12”로 하고, 행정주사보 “166”을 “162”로 하며, 행정서기 “239”를 “228”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92”를 “8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다군(홍보업무 담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지문감정 담당) 3”을 신설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지문감정

담당) 3 다음에 “전문경력관 다군(지문감정 담당) 15”를 신설한다.

별표 15 중 총계 “134,205”를 “134,199”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9,787”을 “129,817”로 하며, 경정 “2,901”을 “2,914”로 하고, 경감 “10,314”를 “10,484”로 하며, 경위 “14,943”을 “17,064”로 하고, 경사 “26,563”을 “28,501”로 하며, 경장 “33,184”를 “31,366”으로 하고, 순경 “41,204”를 “38,810”으로 하며, 일반직 계 “4,396”을 “4,360”으로 하고, 행정주사 “79”를 “78”로 하며,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9”를 “48”로 하고,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8 다음에 “방재안전주사 1”를 신설한다.

별표 15 중 행정주사보 “372”를 “368”로 하고,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38”을 “37”로 하며, 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를 “1”로 하고, 행정서기 “1,180”을 “1,170”으로 하며, 공업서기 “86”을 “83”으로 하고, 공업서기·시설서기·농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임업서기 “12”를 “10”으로 하며,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60”을 “59”로 한다.

별표 15 “농업서기 1”을 삭제하고, 행정서기보 “555”를 “550”으로 하며,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50”을 “48”로 하고, 운전서기보 “33”을 “32”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329”를 “326”으로 하고, 전화상담운영서기보 “19”를 “18”로 한다.

별표 16 중 총계 “135,152”를 “135,146”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9,787”을 “129,817”로 하며, 경정 “2,901”을 “2,914”로 하고, 경감 “10,314”를 “10,484”로 하며, 경위 “14,943”을 “17,064”로 하고, 경사 “26,563”을 “28,501”로 하며, 경장 “33,184”를 “31,366”으로 하고, 순경 “41,204”를 “38,810”

으로 하며, 일반직 계 “5,343”을 “5,307”로 하고, 행정주사 “123”을 “122”로 하며,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50”을 “49”로 하고,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49 다음에 “방재안전주사 1”를 신설한다.

별표 16 중 행정주사보 “499”를 “495”로 하고,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39”를 “38”로 하며, 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2”를 “1”로 하고, 행정서기 “1,554”를 “1,544”로 하며, 공업서기 “88”을 “85”로 하고, 공업서기·시설서기·농업서기·환경서기 또는 임업서기 “12”를 “10”으로 하며,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63”을 “62”로 한다.

별표 16 “농업서기 1”을 삭제하고, 행정서기보 “613”을 “608”로 하며,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50”을 “48”로 하고, 운전서기보 “311”을 “310”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329”를 “326”으로 하고, 전화상담운영서기보 “19”를 “18”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8, 별표11, 별표12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경찰청의 정원 1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2명, 경사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과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333명(경정 4명, 경감 22명, 경위 46명, 경사 65명, 경장 63명, 순경 96명, 6급 2명, 7급 6명, 8급 17명, 9급 1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 밑에 <u>혁신기획조정담당관·재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자치경찰담당관</u> 및 정책지원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4조(기획조정관) ① ----- --- <u>혁신기획조정담당관·재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u> ----- -----.
② <u>혁신기획조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자치경찰담당관</u> 및 정책지원담당관은 총경으로 보하고, 재정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보한다.	② <u>혁신기획조정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u>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u>자치경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u>	<삭제>
1. <u>자치경찰제도 관련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u>	
2. <u>자치경찰제도 관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치안 현안 및 운영현황 총괄 관리</u>	
3. <u>자치경찰제도의 연구 및 개선</u>	
4. <u>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에</u>	

대한 사무 총괄	
5. <u>자치경찰제도 관련 시·도 조례 제정·개정에 관한 협의·조정</u>	
6. <u>자치경찰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u>	
7. <u>자치경찰제도 관련 재정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u>	
8. <u>자치경찰제도 관련 시·도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u>	
9. <u>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 간 기관협의체 운영 지원</u>	
10. <u>그 밖에 자치경찰제도 관련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u>	
⑦ (생략)	⑥ (현행 제7항과 같음)
제5조(경무인사기획관) ①·② (생략)	제5조(경무인사기획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경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무인사기획관을 보좌한다.</u>	③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설>	12. <u>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u>

12. (생 략) ④ ~ ⑦ (생 략) <신 설>	<u>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u>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치안상황관리관) ① <u>치안상황관리관 밑에 치안상황관리담당관 1명을 두되, 총경으로 보한다.</u> ② <u>치안상황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치안상황관리관을 보좌한다.</u> 1. <u>치안 상황의 접수·상황판단, 전파 및 초동조치 등에 관한 사항</u> 2. <u>112신고제도의 기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총괄</u> 3. <u>지구대·파출소 운영체계의 기획, 관리</u> 4. <u>지구대·파출소 정원, 인사, 복무, 예산, 성과 관리</u> 5. <u>지구대·파출소 외근활동 기획 및 운영</u> 6. <u>지구대·파출소 근무자에 대한 교육</u>
제8조(생활안전국) ①·② (생	제8조(생활안전국) ①·② (현행

략) ③ <u>생활안전국에 범죄예방정책과·생활질서과·아동청소년과 및 여성안전기획과를 둔다.</u> ④ (생 략) ⑤ <u>범죄예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7. (생 략) ⑥ <u>생활질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풍속 및 성매매(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단속</u> 2. <u>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도·단속</u>	과 같음) ③ ----- <u>범죄예방정책과·자치경찰과·아동청소년과</u>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6. (현행과 같음) 7. <u>풍속 및 성매매(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제외한다) 사범에 관한 지도·단속</u> 8. <u>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도·단속</u> 9. <u>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u> 10. <u>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u> 11. (현행 제7호와 같음) ⑥ <u>자치경찰과장</u>----- -----. 1. <u>자치경찰제도 관련 각종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u> 2. <u>자치경찰제도 관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치안 현안 및 운영현황</u>
---	--

	<u>총괄 관리</u>
3. <u>즉결심판청구업무의 지도</u>	3. <u>자치경찰제도의 연구 및 개선</u>
4. <u>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항</u>	4. <u>자치경찰제도 관련 법령에 대한 사무 총괄</u>
<u><신 설></u>	5. <u>자치경찰제도 관련 시·도 조례 제정·개정에 관한 협의·조정</u>
<u><신 설></u>	6. <u>자치경찰제도 관련 예산의 편성과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u>
<u><신 설></u>	7. <u>자치경찰제도 관련 재정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u>
<u><신 설></u>	8. <u>자치경찰제도 관련 시·도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u>
<u><신 설></u>	9. <u>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청 간 기관협의체 운영 지원</u>
<u><신 설></u>	10. <u>그 밖에 자치경찰제도 관련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u>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10조(경비국) ①·② (생 략)	제10조(경비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③ -----

장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행사경비·선거경비 등 일반 경비계획 수립 및 지도</u>	3. <u>국가중요행사 및 선거경비 지원 관련 업무</u>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④ <u>위기관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④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11. <u>재난·위기 업무에 대한 지원 및 지도</u>
<u><신 설></u>	12. <u>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u>
<u><신 설></u>	13. <u>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지도</u>
<u><신 설></u>	14. <u>비상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u>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3조(수사기획조정관) ① <u>수사 기획조정관 밑에 수사운영지원 담당관 및 수사심사정책담당관 각 1명을 둔다.</u>	제13조(수사기획조정관) ① ----- 수사기획담당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수사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u>	③ <u>수사기획담당관</u>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수사국) ①·② (생 략)	제16조(수사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u>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u>
7.·8. (생 략)	8.·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112치안종합상황실장) ① (생 략)	제34조(112치안종합상황실장) ① (현행과 같음)
②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경찰청장을 보좌한다.	②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서울경찰청 소관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관리 업무</u>	<삭 제>
6. <u>비상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u>	<삭 제>
제38조(경비부) ①·② (생 략)	제38조(경비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경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③ -----

장한다.	-----.
1. <u>일반경비·다중경비·혼잡경비 및 재해경비에 관한 사항</u>	1. <u>다중경비·국가중요행사 및 선거경비 지원 관련 업무</u>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u>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u>	<삭 제>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④ 테러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u>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 상황관리 업무</u>
<신 설>	9. <u>비상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u>
<신 설>	10. <u>민방위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u>
<신 설>	11. <u>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 지원 관련 업무</u>
제50조(하부조직) ①·② (생 략)	제50조(하부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북부·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도경찰청 공공안전부에 경무기획</u>	③ <u>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북부·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u>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3]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7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926</u>	<u>1,930</u>	+4
경찰공무원 계	<u>1,213</u>	<u>1,217</u>	+4
·	·	·	
·	·	·	
경 정	<u>161</u>	<u>163</u>	+2
경 감	<u>417</u>	<u>415</u>	-2
경 위	<u>341</u>	<u>340</u>	-1
경 사	<u>176</u>	<u>177</u>	+1
경 장	<u>29</u>	<u>31</u>	+2
순 경	<u>12</u>	<u>14</u>	+2
소방공무원 계	<신 설>	<u>4</u>	+4
소방령	<신 설>	<u>4</u>	+4
일반직 계	<u>713</u>	<u>709</u>	-4
·	·	·	
·	·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3</u>	<u>12</u>	-1
·	·	·	

행정주사보	<u>141</u>	<u>137</u>	-4
·	·	·	
·	·	·	
행정서기	<u>218</u>	<u>207</u>	-1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92</u>	<u>86</u>	-6
·	·	·	
·	·	·	
<u>전문경력관 나군(지문감정 담당)</u>	<u><신 설></u>	<u>3</u>	+3
<u>전문경력관 다군(지문감정 담당)</u>	<u><신 설></u>	<u>15</u>	+15

[별표 14]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7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2,040</u>	<u>2,044</u>	+4
경찰공무원 계	<u>1,213</u>	<u>1,217</u>	+4
·	·	·	
·	·	·	
경정	<u>161</u>	<u>163</u>	+2
경감	<u>417</u>	<u>415</u>	-2
경위	<u>341</u>	<u>340</u>	-1
경사	<u>176</u>	<u>177</u>	+1
경장	<u>29</u>	<u>31</u>	+2
순경	<u>12</u>	<u>14</u>	+2
<u>소방공무원 계</u>	<u><신 설></u>	<u>4</u>	+4
<u>소방령</u>	<u><신 설></u>	<u>4</u>	+4
일반직 계	<u>827</u>	<u>823</u>	-4
·	·	·	
·	·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3</u>	<u>12</u>	-1
·	·	·	
행정주사보	<u>166</u>	<u>162</u>	-4

•	•	•	
•	•	•	
행정서기	<u>239</u>	<u>228</u>	-1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92</u>	<u>86</u>	-6
•	•	•	
•	•	•	
<u>전문경력관 나군(지문감정 담당)</u>	<u><신 설></u>	<u>3</u>	+3
<u>전문경력관 다군(지문감정 담당)</u>	<u><신 설></u>	<u>15</u>	+15

[별표 15]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34,205</u>	<u>134,199</u>	-6
경찰공무원 계	<u>129,787</u>	<u>129,817</u>	+30
•	•	•	
•	•	•	
경 정	<u>2,901</u>	<u>2,914</u>	+13
경 감	<u>10,314</u>	<u>10,484</u>	+170
경 위	<u>14,943</u>	<u>17,064</u>	+2121
경 사	<u>26,563</u>	<u>28,501</u>	+1938
경 장	<u>33,184</u>	<u>31,366</u>	-1818
순 경	<u>41,204</u>	<u>38,810</u>	-2394
•	•	•	
•	•	•	
일반직 계	<u>4,396</u>	<u>4,360</u>	-36
•	•	•	
•	•	•	
행정주사	<u>79</u>	<u>78</u>	-1
•	•	•	
•	•	•	

전산주사	또는	<u>49</u>	<u>48</u>	-1
방송통신주사				
<u>방재안전주사</u>	<u><신 설></u>	<u>1</u>	+1	
.	.	.		
행정주사보		<u>372</u>	<u>368</u>	-4
.	.	.		
.	.	.		
공업주사보	또는	<u>38</u>	<u>37</u>	-1
시설주사보				
.	.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u>2</u>	<u>1</u>	-1
또는 임업주사보				
.	.	.		
.	.	.		
행정서기		<u>1,180</u>	<u>1,170</u>	-10
.	.	.		
.	.	.		
공업서기		<u>86</u>	<u>83</u>	-3
.	.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농업서기		<u>12</u>	<u>10</u>	-2
· 환경서기 또는 임업서기				

.	.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60</u>	<u>59</u>	-1	
<u>농업서기</u>	<u>1</u>	<u><삭 제></u>	-1	
.	.	.		
.	.	.		
행정서기보	<u>555</u>	<u>550</u>	-5	
.	.	.		
.	.	.		
공업서기보	<u>50</u>	<u>48</u>	-2	
시설서기보				
.	.	.		
.	.	.		
운전서기보	<u>33</u>	<u>32</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329</u>	<u>326</u>	-3	
전화상담운영서기보	<u>19</u>	<u>18</u>	-1	
.	.	.		
.	.	.		

[별표 16]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35,152</u>	<u>135,146</u>	-6
경찰공무원 계	<u>129,787</u>	<u>129,817</u>	+30
·	·	·	
·	·	·	
경정	<u>2,901</u>	<u>2,914</u>	+13
경감	<u>10,314</u>	<u>10,484</u>	+170
경위	<u>14,943</u>	<u>17,064</u>	+2121
경사	<u>26,563</u>	<u>28,501</u>	+1938
경장	<u>33,184</u>	<u>31,366</u>	-1818
순경	<u>41,204</u>	<u>38,810</u>	-2394
·	·	·	
·	·	·	
일반직 계	<u>5,343</u>	<u>5,307</u>	-36
·	·	·	
·	·	·	
행정주사	<u>123</u>	<u>122</u>	-1
·	·	·	
·	·	·	

전산주사 또는	<u>50</u>	<u>49</u>	-1
방송통신주사			
방재안전주사	<신 설>	<u>1</u>	+1
·	·	·	
행정주사보	<u>499</u>	<u>495</u>	-4
·	·	·	
·	·	·	
공업주사보 또는	<u>39</u>	<u>38</u>	-1
시설주사보			
·	·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u>2</u>	<u>1</u>	-1
또는 임업주사보			
·	·	·	
·	·	·	
행정서기	<u>1,554</u>	<u>1,544</u>	-10
·	·	·	
·	·	·	
공업서기	<u>88</u>	<u>85</u>	-3
·	·	·	
공업서기 · 시설서기 · 농업서기	<u>12</u>	<u>10</u>	-2
· 환경서기 또는 임업서기			

·	·	·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u>63</u>	<u>62</u>	-1
농업서기	<u>1</u>	<삭 제>	-1
·	·	·	
·	·	·	
행정서기보	<u>613</u>	<u>608</u>	-5
·	·	·	
·	·	·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50</u>	<u>48</u>	-2
·	·	·	
·	·	·	
운전서기보	<u>311</u>	<u>310</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329</u>	<u>326</u>	-3
전화상담운영서기보	<u>19</u>	<u>18</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연 락 처	02-3150-1157